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작성요령포함》

2022. 02.

국 토 교 통 부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I. 일반사항

1. 이 기준은 「환경영향평가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3제3항 별표4의2에 따라 환경부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환경부 고시 제2020-125호, 2020.06.22)」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시 이 기준에 따른다.
2. 평가결과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며,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근거하여 국토교통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사업책임평가자의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를 평가한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입찰에 참여하고자하는 자는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붙임의 현황을 별지로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하고, 평가자료 작성 시에는 동 기준의 내용 등을 숙지하여 평가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평가는 제출된 자료에 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기술인 경력관리기준(환경부)에 따른다. 또한, 참여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인 해외용역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발주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국토교통부 소속직원 또는 외부위원 3인 이상)를 구성·운영하며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가. 평가서류의 오류 등에 대한 적용여부 등

나. 기타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6. 해당 용역의 사업수행능력(PQ) 평가결과가 용역적격심사 및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965호, 2018.1.4.) 제4조 제4항에 따른 기준점수 이상인 용역업체를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7.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중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한 경우 잔여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8.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평가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PQ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이하는 반올림한다.
9. 평가시 기간계산 및 평가기준일은 용역집행계획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 등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하고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0.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하되,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1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평가항목 중 업체능력평가는 상대평가로 하고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한다.
12.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차기용역 평가 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13. 평가기준의 배포는 인터넷 게시(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공지사항)로 같음하며, 배포된 평가기준에 수정·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인터넷 게시로 같음하오니 참여업체는 입찰 전까지 수시로 열람하여야 한다.

14.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용역사에서 스스로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공문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책자에 포함하여 제출한다(참여기술인 경력, 실적, 업무중복도 등 평가 점수 산출근거를 반드시 평가서에 첨부할 것).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환경평가참여자 능력평가

가. 참여기술인은 공고일 현재 참여회사에 재직중인 자로서 환경영향평가업 또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 등록된 자에 한한다.

나. 총괄(환경) 1인, 환경분야 책임기술인 2인, 환경분야 참여기술인 2인 을 포함한 총 5인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등급·경력·실적을 평가한다.

다. 분야별 참여기술인의 점수 배분 가중치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 책임기술인(2인) : 환경분야 1.0
- 참여기술인(2인) : 환경분야 1.0

라. 공고일 현재 참여기술인의 최근 설계용역업체간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 점수에 감소계수를 곱하여 최종 평가점수를 산출한다. 단, 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과 이적 직전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무직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을 적용한다.

- 최근 이적기간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기간 3개월이상 6개월미만 : 0.9
- 최근 이적기간 6개월이상 : 1.0

※ 직전소속회사에서 확인하는 재직기간을 증빙할 수 있는 퇴직증명서 등을 첨부할 것

마.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 평가

참여기술인의 자격 및 등급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사,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38호, 2019.12.24)」에 따른 해당분야 기술자를 등급별로 차등 평가한다.

참여기술인의 자격이 기술사인 경우 「기술사법」 제5조7의4항 및 시행령 제17조2의3항에 따라 등록 및 5년 이내에 갱신한 등록증 또는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공고일 기준 기술사자격의 미등록 및 미갱신된 경우 기술자 등급 평가시 기술사는 불인정)

바. 참여기술인의 경력평가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1) 총괄(환경) 및 환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가) 환경분야(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및 상기 용역의 검토·협의·감독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우 : 100%

나) 기타 토목분야 설계(타당성조사, 기본계획조사, 기본설계, 실시설계) 경력 중 전문분야가 환경인 경우 : 60%

사. 참여평가자의 경력평가시 근무경력의 인정범위

1) 상기 “바”항의 경력중 참여기술인의 경력인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제6호에 의거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용역에 참여한 경우로서 해당 경력은 발주기관, 용역의 종류에 따라 “바”항 기준에 의거 차등 평가한다.

2) 발주기관 근무경력 중 개인경력확인서에는 감독관련업무를 수행한 용역명이 명확히 기재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하며, 경력증명서 상에 발주기관,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인정하지 않는다.

3) 발주기관에서 시행한 용역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는 경력에 한하며, 경력증명서상에 발주기관, 사업명 등이 불분명 또는 미기재 되어 있는 경력은 불인정한다.

4) 일정 기간 내에 서로 상이한 전문분야의 건설공사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중복기간을 중복사업 건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주요경력/참여기간(인정일)중 “인정일”로 계산<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938호 (2019.12.24.) 건설기술자 등급 인정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기준[별표3] 건설기술자의 등급 산정 및 경력인정방법 등 2. 자격·학력·경력 및 교육지수의 세부항목별 배점 및 산식 “다”항 적용>

예) 2018.1.1 ~ 2018.6.30(80일) → 80일 적용

5) 참여평가자의 경력산정시 전체분이 준공되지 않은 사업은 제외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차수분 준공을 인정한다.

아. 참여평가자의 실적평가 기준

1) 총괄(환경) 및 환경분야 책임(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국토교통부(지방국토관리청, 지방항공청 포함, 이하 “국토교통부”이라 한다), 행정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이라 한다),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공공기관(이하 “해당 공공기관”이라 한다). -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도시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발주하여 최근 10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영향평가 등 용역에 대하여 실적을 평가한다.

[위에서 언급한 공공기관의 다른 용역에 포함하여 환경관련용역을 수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해당 발주기관 확인)를 첨부하여야 함]

※ 단, 10년내 해외근무기간이 포함된 경우 해외근무기간의 1/2만큼 기준기간 연장

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당해 발주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당해 발주 해당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 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의미

평가 종류 발주사업종류	전략환경 영향평가	환경영향 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 영향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1.0건	1.0건	0.6건	0.6건
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0.6건	0.6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건	1.0건	1.0건	0.6건
사후환경영향조사	0.6건	1.0건	0.6건	1.0건

나)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철도분야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상기 가), 나)항 적용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 발주 예시

- 철도사업 환경영향평가 1건, 사후환경영향조사 1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1건, 전략환경영향평가 1건, 철도 외 환경영향평가 1건의 실적을 보유한 자의 경우

보유실적	가)항 적용계수①	나)항 적용계수②	적용 건수(①×②)
철도 환경영향평가	1.0	1.0	1.0
철도 사후환경영향조사	0.6	1.0	0.6
철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0.6	1.0	0.6
철도 전략환경영향평가	0.6	1.0	0.6
철도 외 환경영향평가	1.0	0.6	0.6
계			3.4건

다)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도 전체 1건으로 인정

2)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기관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한다.

자. 업무여유도

- 1) 참여평가자가 현재 수행중인 국토교통부, 행복청, 광역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한 환경영향평가 등의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 2) 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평가자가 사업책임기술자 또는 분

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단, 해당 발주기관이 확인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용역중지 중인 사업 및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미산입)

다만,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과 상관없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에 사업 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참여한 경우(종전 고시 제2013-91호 기준 준용), 국토교통부 고시(제2014-270호) 시행일 이후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단, 시행일 이전에 발주된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경우라도 시행일 이후에 투입된 경우는 업무여유도 평가대상 해당), 해당 용역의 발주시점 및 용역규모(금액)와 상관없이 시행일 이후 투입된 분야별 참여기술자의 경우를 중복기간으로 산정한다.

- 3) 업무중복내용은 당해기술자(총괄, 분야별 책임평가자, 분야별 참여평가자)가 참여중인 "1)항의 용역에 대하여 해당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기관(발주기관 및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 조희과정에서 누락사실이 발견되면 해당기술자의 업무여유도 평가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단, 누락된 용역의 과업기간을 합산 평가하여 점수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기술자 여유도 점수를 0점 처리한다.)

- ※ 업무여유도 작성자료(양식 3)는 파일로 별도 제출(CD 또는 USB 1부, 한글파일)
- 한글파일은 동일 용역에 참여하는 업체 간의 공개검증 자료로 활용하므로 반드시 수정이 불가능한 배포파일로 작성 제출할 것.

차. 참여평가자의 교육훈련

- 1)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
- 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나) 교육시간별 점수
- 2주 이상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 1주 = 1일 7시간 교육×5일(35시간)

카. 과업의 이해도(전차)

- 1) 전차점수 = 배점 × 연장비율 × 기성률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2) 전차용역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가 전차점수 인정
 - 전략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차없음
 - 환경영향평가 발주 시 : 전략환경영향평가
 - 사후환경영향조사 발주 시 : 환경영향평가
- 3) 전차용역 수행의 경우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전차용역을 수행 중이거나 완료되지 않은 전차용역의 실적은 발주기관이 발행한 실적증명서(기성률 확인)를 첨부 할 경우 기성률 만큼 실적을 인정한다.
 - 기성률 = (기성금액/전체금액)으로 산정하고, 이때 기성률은 소수점 둘째자리까지로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참여업체의 유사평가 수행실적 인정 대상사업은 국토교통부, 행복청, 새만금개발청,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및 도),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하여 최근 5년(공고일 기준)내 전체 준공(장기계속의 차수준공은 제외)한 환경관련 용역(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舊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에 대하여 용역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실적 건수 및 금액을 인정한다.

1) 환경영향평가 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당해 발주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당해 발주 해당평가 외 : 0.6

※ 환경영향평가 등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2)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철도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3) 장기계속 용역인 경우 최종 준공되어야 1건의 실적으로 인정한다. 단,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은 1차분 이상이 준공된 경우 실적의 건수를 1건으로 인정하고, 금액은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준공된 차수분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4)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경우 참여지분 비율대로 건수와 금액을 각각 평가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한 용역은 하도급 받은 비율만큼 인정함.(발주기관의 확인서류를 첨부한 경우)
- 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해당 공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체에서 발주한 용역사업의 수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가”항의 유사용역실적 건설공사에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방식으로 참여하여 낙찰자로 결정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하되, 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의 설계보상 대상자의 유사용역실적은 낙찰자의 80%로 한다.
다만, 실적금액(설계시공일괄입찰 또는 대안입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설계용역에 한함)은 낙찰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 대가 기준 중 건설부문 요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하며, 아래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 설계·시공 일괄입찰공사 또는 대안입찰공사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낙찰자로 결정된 증빙서류와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계약서 등
 - 민간투자사업의 설계를 수행한 실적은 사업시행자 지정공문 사본, 공사금액을 알 수 있는 서류 등, 사업시행자와 설계용역사간에 체결한 계약서류 사본,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설계완료 증빙자료
 - 설계용역비와 환경관련 용역비를 구분하여 자료 제출
- 6)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 정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설계용역 및 설계·시공일괄입찰(Design-Build방식 포함)을 수행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유사용역 실적(건수 및 금액)으로 인정한다. 단, 금액은 준공

일 기준으로 한국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 해외실적의 경우 외국정부 및 해당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용역은 용역 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기관의 확인서 등 사실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관련자료 미제출시 평가제외)

나. 신용도

- 1)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별표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 처리한다.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2)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의해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3)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별점으로 감점(감점의 합이 6점을 초과하는 경우 6점 감점)한다
- 4) 재정상태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나) 신규·합병·분할·사업양수·양도한 설계 등 용역업자는 새로운 신

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평가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나)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한다.

다.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 개발실적은 환경분야 및 그밖의 분야의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개발 실적 및 연구보고서 실적에 등급별 가중치 및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가)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나) 등급별 가중치(A)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연구보고서 0.1

다)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

- 신기술, 특허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 실용신안 : 5년미만 1.0, 5년이상 10년미만 0.8, 10년이상 0

라) 건설신기술은 설계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 및 실용신안은 설계 등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로서 철도·환경분야와 관련 있는 것에 한하여 인정하며, 공동도급에 의한 경우에는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

-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실용신안은 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하며, 선등록인 경우는 불인정. 제출서류로서 동내용의 확인이 불가할 경우 불인정

- 특허등록결정, 실용신안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기술개발실적은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2) 투자실적은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 3%이상 2점, 3%미만 2.5%이상 1.8점, 2.5%미만 2%이상 1.6점, 2%미만 1.5%이상 1.4점, 1.5%미만 1%이상 1.2점, 1%미만 0점
- 가)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타인이 보유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에 대한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기술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 나) 해당 설계등 용역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을 제출한다.
- 다) R&D사업 참여실적에 적용된 실적금액은 투자실적에 포함한다.
- (1) R&D사업 참여 실적은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8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연구수행(참여) 실적증명서(양식13)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해당 연구개발사업(과제)의 중간 및 최종평가지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36조 제1항에 따른 중간평가결과가 극히 불량한 연구개발과제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2)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라 함은 각각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2조제5호, 제6호, 제8호에서 정한 기관 및 기업을 말한다.
 - (3) 「국토교통부소관연구개발사업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기획연구” 과제에 대한 참여실적은 R&D사업 참여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 (4) 참여건수는 해당기업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내에 현금부담 금액을 대기업 5,000만원, 중소기업 1,000만원 부담이 완료된 사업(과제)에 한하여 인정(연차별 과제 협약종료일 기준으로 하며, 종료과제의 경우 최종평가일 기준)한다.
 - (5) 참여실적 인정은 해당기업이 위 3)의 조건을 만족한 시점부터 3년간 인정하되, 전체 연구기간 중 1회만 인정한다.
- 3) 활용실적은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등급별 계수와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를 곱하여 계산(최대 2점)

- 가) 산출식 = $\Sigma(\text{환경분야 건당} 1.0 \times A \times B \times C) + \Sigma(\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times C)$
- 나) 활용건수 및 금액에 따른 가중치(A)
- 활용건수 가중치 : 5건이상 1.0, 4건이상 0.9, 3건이상 0.8, 2건이상 0.7, 1건이상 0.6 1건미만 0
 - 활용금액 가중치 : 20억이상 1.0, 18억이상 0.9, 16억이상 0.8, 14억이상 0.7, 12억이상 0.6, 12억미만 0
 - ※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만 만족하면 인정
- 다) 등급별 계수(B)
- 신기술 1.0, 특허 0.6, 실용신안 0.3
- 라)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
- 5년미만 1.0, 10년미만 0.8, 20년미만 0.6, 20년이상 0
- 마) 용역업자가 철도,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되어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
- 바) 철도,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및 실용신안은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만료 기간 내에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공사에 반영되어 동 기간 내에 실제 활용(해당기술의 공사기성 완료시점)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 사) 철도,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 아) 철도, 환경분야와 관련이 있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라. 공동도급

- 가)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경우 : 0.5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 한 업체가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경우는 제외하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마. 업체능력평가

- 1) 업체능력 평가를 위한 자료는 별첨 “양식11”을 참고하여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별도로 5부를 제출하여야 한다.(평가서 미제출시 해당 항목 0점 처리)
- 2) 사업책임평가자의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는 배점범위 내에서 아래 [참여회사수별 배분율]에 따라 상대 평가한 후 평가위원들의 합계 점수를 산술 평균한다.

[참여회사수별 평가등급 배분표]

업체수	등 급					업체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	1	1				22	2	5	9	4	2
3	1	1	1			23	2	5	9	5	2
4	1	2	1			24	2	5	10	5	2
5	1	2	1	1		25	3	5	10	5	2
6	1	2	1	1	1	26	3	5	10	5	3
7	1	2	2	1	1	27	3	5	11	5	3
8	1	2	3	1	1	28	3	6	11	5	3
9	1	2	3	2	1	29	3	6	11	6	3
10	1	2	4	2	1	30	3	6	12	6	3
11	1	2	5	2	1	31	3	6	13	6	3
12	1	3	5	2	1	32	3	7	13	6	3
13	1	3	5	3	1	33	3	7	13	7	3
14	1	3	6	3	1	34	3	7	14	7	3
15	2	3	6	3	1	35	4	7	14	7	3
16	2	3	6	3	2	36	4	7	14	7	4
17	2	3	7	3	2	37	4	7	15	7	4
18	2	4	7	3	2	38	4	8	15	7	4
19	2	4	7	4	2	39	4	8	15	8	4
20	2	4	8	4	2	40	4	8	16	8	4
21	2	4	9	4	2						

바. 하도급준수(감점 항목)

- 1)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라 평가하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별점부과기준에 따른 최근 3년간 별점누산점수만큼 감점

사. 청년고용(가점 항목)

- 1)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에 따라 평가하며,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전략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 배점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경평가 참여 능력평가		[100]							
	(1)자격및등급	[14]							
	(가)총괄	(3)	○ 참여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5의2 및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라 평가한다.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6)							
	(다)분야별 평가자	(5)							
	구분			환경영향 평가사	해당 기술사	특급 평가자	고급 평가자	중급 평가자	초급 평가자
	총괄			100%	95%	90%	-	-	-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순		-	100%	100%	90%	80%	-
		복잡		-	100%	90%	80%	-	-
	분야별 평가자	단순		-	100%	100%	100%	100%	90%
복잡		-		100%	100%	100%	90%	80%	
				※ 단순사업 및 복잡사업의 기준은 부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 구분란 중 총괄의 기술사는 환경분야 기술사에 한하되, 2020.1.1부터는 환경영향평가사만 총괄로 인정한다.					
(2)환경영향평가 가등 경력	[17]								
(가)총괄	(4)	○ 참여평가자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환경영향평가법」 제2조 제4호)과 사후환경영향조사(「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기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 : 100% - 기타 환경분야 : 60%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평가자	(6)								
구분			경력년수						
			17년이상	15년이상	13년이상	10년이상	9년이상	7년이상	7년미만
총 괄	단 순		100%	100%	90%	80%	70%	60%	50%
	복 잡	100%	90%	80%	70%	60%	50%	40%	
분야별 책임 평가자	단 순	100%	100%	100%	90%	80%	70%	60%	
	복 잡	100%	100%	90%	80%	70%	60%	50%	
분야별 평가자	단 순	100%	100%	100%	100%	100%	90%	80%	
	복 잡	100%	100%	100%	100%	90%	80%	70%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부평가방법																																																		
환경영향평가 참여 능력 평가	(3) 환경영향평가등 실적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10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p> <p>○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등이란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p>○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구분</th> <th rowspan="2"></th> <th colspan="5">실적건수</th> </tr> <tr> <th>15건이상</th> <th>13건이상</th> <th>11건이상</th> <th>9건이상</th> <th>9건미만</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총괄</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분야 책임평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2">분야 참여평가자</td> <td>단순</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r> <tr> <td>복잡</td> <td>100%</td> <td>100%</td> <td>100%</td> <td>90%</td> <td>80%</td> </tr> </tbody> </table> <p>※ 참여한 평가자가 공공기관에서 평가서 협의, 검토, 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실무 업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실적으로 인정</p>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구분		실적건수																																																			
		15건이상	13건이상	11건이상	9건이상	9건미만																																															
총괄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책임평가자	단순	100%	100%	90%	80%	70%																																															
	복잡	100%	90%	80%	70%	60%																																															
분야 참여평가자	단순	100%	100%	100%	100%	90%																																															
	복잡	100%	100%	100%	90%	80%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4 7 6	<p>○ 모든 참여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하되 발주기간(공고일기준 최대 1년)과 중복되어 수행중인 환경영향평가등(사후환경영향조사를 포함한다)의 중복금액으로 평가한다.</p> <p>○ 1인당 중복금액의 평가</p> $\sum [\text{계약금액} \times (\text{공고일기준 향후 1년이내의 잔여개월수} / \text{총계약기간}) / 10\text{인}]$ <p>※ 3개월이상 과업중지중인 사업은 제외 ※ 협의완료된 사업은 여유도 평가 시 제외</p> <p>○ 평가자별 업무여유도 점수 계산</p> <p>배점 - [배점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p> <p>※ 1인당 수행금액이 5.0억 이상인 경우는 "0"점으로 평가한다.</p> <p>※ 인건비의 변동 및 대행비용산정기준 금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기준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p> <p>※ 계약금액은 계약서상의 총계약(지분율 미고려) 금액을 의미함</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환경평가 참여자 능력평가	(5) 교육훈련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한 평가자가 최근 3년간 환경 관련 교육·훈련을 이수한 정도에 따라 평가한다. - 2주 이상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2점 - 1주 이상 2주 미만 교육을 이수한 경우 : (교육이수인원/평가대상인원) × 1점 ※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교육훈련,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교육,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교육,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 기타 타 법령 규정에 의한 환경 교육·훈련 등을 포함한다. ※ 2020.1.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교육 및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사)환경영향평가협회(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교육만 인정한다.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업의 이해도는 전(前)단계 용역에 참여한 평가자에 대해 점수를 부여한다. 이 경우 수년에 걸친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전(前)단계 용역을 포함한다. - 전차점수 = 배점 × 전차평가에 참여한 평가인원수/총평가인원수 ※ 전차평가 참여 인원은 총 과업기간의 1/2이상 참여한 기술자에 한한다.
	(7) 이적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이적 3개월 미만 : 0.8 ○ 최근 이적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 0.9 ○ 최근 이적 6개월 이상 : 1.0 ※ ①회사의 부도, 파산, 해산, 양도·양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이적, ②이적 직전(直前) 회사에서 5년 이상 장기 근속한 경우, ③이적직전(直前) 무직기간이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에는 각각 이적계수 1.0을 적용한다. ※ 해당평가자별 총 점수에 대한 이적계수비율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1) 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등의 실적은 공고일부터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와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영향평가등 구분 :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사후환경영향조사 - 사업발주 시 해당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 1.0 - 해당평가 외 : 0.6 ○ 정책 및 계획, 사업의 종류에 따른 실적계수 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주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 : 1.0 - 기타사업 : 0.6 ○ 사후환경영향조사는 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을 포함한다(1차년도 이상 준공실적은 1건으로 평가하되, 금액은 합산 한다) 																																													
	(나) 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2">구 분</th> <th colspan="5">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3">유사평가실적건수</td> <td>단순</td> <td>10건이상</td> <td>8건이상</td> <td>6건이상</td> <td>4건이상</td> <td>4건미만</td> </tr> <tr> <td>복잡</td> <td>15건이상</td> <td>12건이상</td> <td>9건이상</td> <td>6건이상</td> <td>6건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r> <td rowspan="3">유사평가실적금액</td> <td>단순</td> <td>250%이상</td> <td>200%이상</td> <td>100%이상</td> <td>50%이상</td> <td>50%미만</td> </tr> <tr> <td>복잡</td> <td>500%이상</td> <td>400%이상</td> <td>350%이상</td> <td>300%이상</td> <td>300%미만</td> </tr> <tr> <td>배점</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body> </table>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구 분		회사의 유사평가실적 평가																																														
유사평가실적건수	단순	10건이상	8건이상	6건이상	4건이상	4건미만																																										
	복잡	15건이상	12건이상	9건이상	6건이상	6건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유사평가실적금액	단순	250%이상	200%이상	100%이상	50%이상	50%미만																																										
	복잡	500%이상	400%이상	350%이상	300%이상	300%미만																																										
	배점	100%	90%	80%	70%	60%																																										
(2) 신용도	[9]																																															
(가)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 3] 기준에 의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감점처리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무정지 : 0.2점/월 감점(거짓·부실작성, 복제는 제외하며,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거짓작성 및 복제 : 4점/건 감점, 부실작성 : 2점/건 감점 ○ 평가업체 또는 평가자가 타 법령(계약관련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에 의해 최근 1년내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p>※ 점수계산은 참여업자 및 참여평가자의 누계 별점에 따라 감점</p>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재정상태 건실도	3	<p>○재정상태는 다음표에 따른다.</p> <table border="1" data-bbox="512 300 1406 636"> <tr> <td>회사채</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기업어음</td> <td>A3-이상</td> <td>A3-미만 B-이상</td> <td>C이하</td> </tr> <tr> <td>기업신용</td> <td>BBB-이상</td> <td>BBB-미만 B-이상</td> <td>CCC+이하</td> </tr> <tr> <td>대기업/중기업</td> <td>100%</td> <td>80%</td> <td>70%</td> </tr> <tr> <td>소기업</td> <td>100%</td> <td>90%</td> <td>80%</td> </tr> </table> <p>※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 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에 따라 신용평가업자가 평가한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다만, 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0”점으로 처리할 수 있다</p>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회사채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기업어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기업신용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대기업/중기업	100%	80%	70%																									
소기업	100%	90%	80%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p>○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건당 } 1.0 \times A \times B)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p> <p>※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에 있는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B=1.0을 적용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급별 가중치(A)></p> <table border="1" data-bbox="512 1196 1426 1308"> <tr> <td>구 분</td> <td>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d>연구보고서*</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d>0.1</td> </tr> </table> <p>*연구보고서 실적은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 등과 관련된 연구보고서 등을 기준으로 (사)환경영향평가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B)></p> <table border="1" data-bbox="512 1503 1426 1688">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td> <td>1.0</td> <td>0.8</td> <td>0.6</td> </tr> <tr> <td>실용신안 / 연구보고서</td> <td>1.0</td> <td>0.8</td> <td>-</td> </tr> </table> <p>※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한다.</p>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계 수	1.0	0.6	0.3	0.1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1.0	0.8	0.6																									
실용신안 / 연구보고서	1.0	0.8	-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나)투자실적	(2)	<p>○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실적의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기술개발투자액/총매출액)에 따라 계산</p> <p style="text-align: center;"><기술개발 투자실적 평가방법></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분</td> <td>3% 이상</td> <td>3.0% 미만 2.5% 이상</td> <td>2.5% 미만 2.0% 이상</td> <td>2.0% 미만 1.5% 이상</td> <td>1.5% 미만 1.0% 이상</td> </tr> <tr> <td>점수</td> <td>2</td> <td>1.8</td> <td>1.6</td> <td>1.4</td> <td>1.2</td> </tr> </table>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	1.8	1.6	1.4	1.2																					
	구분	3% 이상	3.0% 미만 2.5% 이상	2.5% 미만 2.0% 이상	2.0% 미만 1.5% 이상	1.5% 미만 1.0% 이상																														
점수	2	1.8	1.6	1.4	1.2																															
(다)활용실적	(2)	<p>○ 산출식 = $\sum(\text{환경분야 } 1.0 \times A \times B \times C) + \sum(\text{환경분야 외 건당 } 0.6 \times A \times B \times C)$</p> <p>※ 단, 신기술은 보호기간 중에 설계에 반영되어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3년 이내에 공사에 반영된 경우만 인정하며, 이 경우 C=1.0을 적용한다.</p> <p>(A) 신기술, 특히, 실용신안 각 1건별 활용건수 및 활용금액에 따른 인정점수</p> <p>(B) 등급별 계수</p> <p>(C) 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p> <p style="text-align: center;"><활용건수 및 금액(A)></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활용건수 (건)</td> <td>5이상</td> <td>5미만 4이상</td> <td>4미만 3이상</td> <td>3미만 2이상</td> <td>2미만 1이상</td> </tr> <tr> <td>활용금액 (억원)</td> <td>20이상</td> <td>20미만 18이상</td> <td>18미만 16이상</td> <td>16미만 14이상</td> <td>14미만 12이상</td> </tr> <tr> <td>가중치</td> <td>100%</td> <td>90%</td> <td>80%</td> <td>70%</td> <td>60%</td> </tr> </table> <p>※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p> <p style="text-align: center;"><등급별계수(B)></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신기술</td> <td>특 허</td> <td>실용신안</td> </tr> <tr> <td>계 수</td> <td>1.0</td> <td>0.6</td> <td>0.3</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경과기간에 따른 가중치(C)></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구 분</td> <td>5년미만</td> <td>5년이상 10년미만</td> <td>10년이상 20년미만</td> </tr> <tr> <td>특허 / 실용신안</td> <td>1.0</td> <td>0.8</td> <td>0.6</td> </tr> </table> <p>※ 본 항목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부터는 환경분야만 인정하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환경분야 인정여부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인정한 것으로 한정 한다.</p>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활용건수 (건)	5이상	5미만 4이상	4미만 3이상	3미만 2이상	2미만 1이상																															
활용금액 (억원)	20이상	20미만 18이상	18미만 16이상	16미만 14이상	14미만 12이상																															
가중치	100%	90%	80%	70%	60%																															
구 분	신기술	특 허	실용신안																																	
계 수	1.0	0.6	0.3																																	
구 분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20년미만																																	
특허 / 실용신안	1.0	0.8	0.6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환경평가업체 능력평가	(4)공동도급	[1]	
			○ 다음과 같이 공동도급할 경우 배점 범위내에서 점수를 부여한다. - 제1종업체↔제2종업체 공동도급 : 0.5(평가제외) - 제1종업체↔소기업(1,2종 포함) 공동도급 : 0.5 ※ 1종과 2종을 동시에 등록한 업체는 하나의 사업자로 보며, 1종업체와 2종업체가 공동도급하는 경우에는 분담이행방식을 말한다. ※ 공동도급의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인 경우만 인정한다(인원기준). ※ 중·소기업 구분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다.
	(5)업체능력평가	[2]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및 참여의향서 평가 - 발주기관별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예 ; 사업책임평가자 능력평가, 참여의향서 등)에 대해 2점의 배점 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이 선택하여 적용토록 한다.
	(6)하도급준수		
			○ 최근 3년간 하도급 준수여부에 따른 점수 부여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에 의한 '별점의 부과기준' 에 따른다. 이 경우 발주청은 필요 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7)청년고용		
	0.1 0.2 0.3		○ 환경영향평가업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 1% 이상 : 0.1점 · 2% 이상 : 0.2점 · 3% 이상 : 0.3점 ※ 신규 고용율 = 최근 3년간 신규로 등록된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합(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의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소숫점 이하는 절삭 ※ 신규 기술인력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에 신규 채용되어(3년내 퇴사한 경우 제외)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된 자로서 만 35세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함(평가분야에서 근무경력이 없는 자) ※ 최초 입사일 현재 만 32세를 초과하여 신규 고용된 자는 만 35세를 초과한 경우에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만 3년간 청년고용 가점을 인정함 ※ 환경영향평가업 기술인력의 평균은 월단위로 산정(월말 기준) - 경력관리 수탁기관이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본 평가항목은 환경영향평가 경력/실적관리 시스템 구축 완료후1년 후부터 평가한다.

* 비고 : 위 별표의 사업수행능력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부표에 따른다.

[부표]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I. 일반사항

1.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환경영향평가기술자의 기술자격 및 학력·경력 등의 인정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기준」(환경부고시)에 따른다.
2. 참여평가자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 등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평가수행실적·신용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해외평가수행실적·전차용역수행실적·참여평가기술자 해외용역 참여실적 등은 실적관리수탁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4. 평가자료 제출 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II.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총괄, 분야별책임평가자 및 분야별평가자는 반드시 당해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평가기술자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2.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유사용역 수행실적·재정상태 건설도·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자는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시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4. 해외평가 용역수행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해외건설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 해외평가 용역비는 해당 국가의 발주기관과 준공금액을 준공일 기준으로 한국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5. 참여평가자의 해외용역 참여실적은 용역계약서류 또는 해당국 발주청의 확인서 등 사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사)환경영향평가협회가 확인한 후 발급한 실적에 한하여 평가한다.
6. 환경영향평가등 종류 및 난이도에 따른 구분
 -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를 고려하여 구분 평가토록 하되, 사업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구 분	환경영향평가등의 종류에 의한 기준
단순사업	복잡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환경영향평가등
복잡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 포함) 전략환경영향평가(정책계획에 한한다.)

7. 참여평가자의 구성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과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 ‘등급별 환경영향평가업의 기술인력 및 시설장비기준’ 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총괄포함 최소 7인 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최소 5인을 기준으로 하며,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최소 8인을 평가 기준인원으로 한다. 단, 기준인원은 사업특성 및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8. 참여평가자 경력산정

- 평가인력의 경력은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과 사업의 종류를 고려하여 평가하되, 발주청은 환경영향평가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의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기간을 환경영향평가등의 경력으로 인정한다.

9. 참여평가자 실적산정

- 평가인력의 실적은 발주청이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외에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5]에 따른 검토·협의·감독 등 환경영향평가 실무에 종사한 경우에는 연간 3건을 수행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10. 업무여유도 평가

- 업무여유도 평가는 발주기간 내(발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는 1년을 적용한다)에 중복되는 환경영향평가등의 수행금액의 합계로 평가한다.

11. 교육훈련 인정

- 기타 환경영향평가등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이란 다음과 같다.

가. (사)환경영향평가협회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기술자 실무역량교육과정

나. 국립환경인력개발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실시하는 환경영향평가 분야 이러닝교육. 다만, 교육과정이 집합교육과 병행하여 시행되는 경우로서 전체 교육시간의 80%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다. 환경영향평가기술자가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분야와 관련하여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교육시간은 각각의 활동시간을 합하되, 최고 30시간 범위안에서 인정한다.)

- 1) 환경 관련 국내외 석사·박사 학위 취득과정 교육(취득건수별 30시간)
- 2)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교육 또는 연수(수강시간)
- 3) 국내외 학회,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의 학회지 등에 환경 관련 논문(학위 취득을 위한 논문은 인정하지 않는다.)이나 보고서 게재 및 발표(세미나, 포럼 등), 도서의 집필(번역서 포함)(편별 30시간)
- 4) 환경 관련 연수 등의 강사(소속업체 강의 제외)(강의시간 2배)
- 5) 환경 관련 신기술, 신공법 제안 보고서, 국내외 특허출원(발명 및 실용신안 포함)한 업무(건별 30시간)
- 6) 「기술사법」 제14조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또는 (사) 환경영향평가사회에서 주관하는 총회 등에서 실시하는 환경 관련 토론회 등의 행사 참석(참여시간)
- 7)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에서의 환경 관련 심의·심사, 평가활동(참여 시간)
- 8)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이 인정하거나 승인한 공적인 환경 관련 기술자격 획득(회별 20시간)

첨부 1. 사업책임평가자 기술능력 및 업무관리능력 평가기준

구분	배점	지 표
수	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을 뛰어넘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우수하고 창의성이 인정되는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독창적이고 새로운 접근방법을 제시하는 답변
우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우수하고, 창의적인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대해 누락사항이 없고, 보통보다 우수한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범주를 벗어나 고려 및 확인사항을 제시한 답변
미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전체적으로 만족하는 답변을 한 경우 ▪ 발주처 요구사항 누락사항 없고, 일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경우 ▪ 당해 용역 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모두 언급되었으나, 일반적인(보편적인) 범주를 제시한 답변
양	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만족스러운 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 ▪ 발주처의 요구사항에 부분적인 누락사항이 있음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에 못 미치는 답변
가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력과 관련한 발주기관^가의 요구사항에 부실답변을 한 경우 ▪ 발주기관^가의 요구사항에 누락사항이 50%이상인 경우 ▪ 당해 용역관련 주요 검토항목에 대해 일반적인 수준과 동떨어진 매우 부실한 답변

첨부 2.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사업능력 평가자료 작성요령

1. 평가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과업수행조직 및 업무분담 계획표

[사업책임기술자(1인), 환경 책임기술자(2인), 환경 참여기술자(2인)으로 작성

나. 참여기술자에 대한 이력 및 경력, 실적, 업무여유도, 교육이수실적, 과업이해도(양식1~5)

다.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양식6)

라.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양식7)

마. 재정상태 건실도(양식8)

바.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양식9)

사. 재정상태 검토보고서(양식10)

아.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양식11) - 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6부 제출(흑백)
(별책 6부 중 원본 1부(회사명표기), 사본5부(회사명미표기))

자. 참여기술자 현황(양식12) - 공문에 첨부

차. 자기평가서(양식13) - 평가 책자 첨부 및 별책으로 2부 제출

2. 제출부수 : 2부(원본 1부, 부분 1부)

(반드시 평가서 표지 우측 상단에 원본, 부분 표기할 것)

3. 규 격 : A₄(210mm×296mm)

4. 지 질 : 백상지(80g/m²)

5. 인쇄방법 : 공판인쇄 등

6. 제 본 : 양면좌철(무사 무선철)

<양식 1>

□ 참여기술인 현황

구 분	성명	주민등록 번호 (연령)	회사 직위	학력 (학위)	전공	자격증		경력		비고
						종류	취득일	총경력	해당 분야	
총괄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책임평가자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환경분야 참여평가자										

※ 작성요령

기술인의 자격·경력은 한국건설기술인협회의 확인을 받은 것만 인정
평가함.(A4 횡으로 작성)

<양식 2>

□ 참여기술자의 이력 및 경력

◦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위	
연령		최종학교 (학위)		전공	
자격증 (분야및종류)			전문분야 및 등급		
해당분야실적 (최근10년)	건		적용경력	년 월	
상훈 및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 해당분야 실적(최근 10년간 : ○년.○월.○일 ~ ○년.○월.○일)

연번	사업명 사업개요	평가 구분	사업 구분	적용 건수	용역기간	참여기간	참여 당시		발주처	비고
							소속 회사	참여 분야		
		1.0 (환경영향 평가)	1.0 (철도)	1.0	년 월 ~ 년 월 (개월)	년 월 ~ 년 월 (개월)				

- 경력 및 실적증빙서류에서 발췌하여 기재하고, 증빙서와 상이한 사항이 없도록 할 것.
- 참여분야는 사업책임, 분야책임, 분야참여 등으로 구분표기
- 각종 증빙서류는 사본첨부

<양식 3>

□ 참여기술자의 업무여유도

구분	용역명	계약금액 (전체)	1년 이내 잔여 일수	착수일	준공 예정일	총계약 기간 (일)	적용 중복금액	비고 (중지, 협의를 완료 등)
총괄 (000)								
	소계						0.00억 원	
	4 - [4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0.00							
분야별 책임평가 자 (000)								
	소계						0.00억 원	
	7 - [7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0.00							
분야별 평가자 (000)								
	소계						0.00억 원	
	6 - [6 × (1인당 중복금액 2.5억 초과금액/2.5억)] = 0.00							

<작성요령 등>

- ※ 제출자료가 우리시에서 별도로 조회한 결과와 확인하여 평가자료의 내용이 누락 및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총괄평가자는 총괄평가자 항목, 분야별책임·참여평가자는 해당 분야별 책임·참여평가자 항목에 대한 평점을 0점으로 처리.
- ※ 계약금액은 공동도급, 과업내용과 상관없이 단일용역 전체금액 적용
- ※ 용역기간 작성에 있어 용역이 수차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해당 차수가 아닌 총괄 준공예정일을 적용
- ※ 계약서, 중지 공문, 협의완료 공문 사본 등 증빙자료 제출

<양식 4>

□ 교육이수실적(최근3년간)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교육기관	기술사자격보유여부

※교육이수증명서 사본 첨부

<양식 5>

□ 과업의 이해도

◦ 총괄(환경분야)

구분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사업개요	비고

◦ 분야별책임평가자(환경분야)

구분	용역명	계약금액	용역기간	참여기간	사업개요	비고

※ 작성요령

- 본과업에 대한 전차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 다음 증빙서류를 첨부
가. 당해 용역계약서 사본 첨부
나. 구분란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로 구분하여 작성
다. 전차용역 참여실적이 있는 기술자는 공고일 현재 당해회사 소속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제출
라.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도급계약서 사본 및 당해회사 도급액 증빙자료,
도급비율 명시(당해 발주처의 실적증명서 첨부)
마. 발주처의 승인을 득한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계약서 사본 및 발주처
승인서 첨부

<양식 6>

□ 유사용역 사업수행실적

용역명 사업개요	용역기간	계약금액 (백만원)	발 주 처	참여 비율	평가 구분	사업 종류	적용 건수	적용 금액	비고
					1.0 (환 경영 향평 가)	1.0 (철 도)			

※ 작성요령

- 가. 공동도급 실적을 기재시는 공동도급회사별 지분율을 비고란에 표기하고 공동도급계약서 사본첨부
- 나. 용역실적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또는 한국기술사회)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고, 발주기관에서 확인한 실적증명서 등 증빙 첨부(실적증명서에 용역개요 필히 기재)
- 다. 철도 실시설계용역에 포함된 환경관련 용역은 용역기간, 계약금액, 참여비율 등을 실시설계용역과 구분 기재

<양식 7>

□ 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용역업체 및 대표자	용역명	제재받은내용			참여기술자				비 고
		제재명	기간	사유	분야	성명	참여기간	제재명 및 사유	

가. 용역업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의하여 입찰참가제한을 받은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나. 참여기술자는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업무정지 또는 징계처분을 받는 기간 및 내용을 기재한다.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을 받아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처분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다. 참여기술자중 발주기관 임직원으로서 최근 1년간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사항을 기재한다.

※ 가, 나항에 대하여 법원에서 효력정지 등 처분계류중인 사항 및 취소 처분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비고란에 기재하고,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부실별점

참여업체 및 참여기술자	누계평균부실별점	비 고

※ 세부사항은 배점표 참조 및 증빙서류 첨부

<양식 8>

□ 재정상태 건실도

구 분	내 용		비 고
회 사 명			
주 소			
사 업 자 등 록 번 호			
재 무 결 산 기 준 일			
회 사 구 분 (대기업/중기업/소기업)			
등 급	회 사 채		
	기 업 어 음		
	기 업 신 용 도		
등 급 평 가 일			
등 급 유효 기 간			
신 용 평 가 기 관			

※ 작성요령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제1호 또는 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발행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첨부한다.

나. 공동도급으로 참여할 경우 각 업체 모두 작성

<양식 9>

□ 개발실적

구분	등급	건명	개발연도	유효기간	등록권자	적용건수	비고
환경분야	신기술			건설신기술은 유효기간을, 특히, 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소계					00건	
환경분야 외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연구보고서						
	소계					00건	
합계						00건	

※ 작성요령

- 가. 신기술 또는 건설기술에 관련된 특허 및 실용신안중 설계목적에 적합한 것으로서 등록권자가 참여회사인 것만 기재
- 나. 등록단계에는 특허등록결정, 등록유지결정, 선등록 등을 기재
- 라. 신기술지정증서, 특허 및 실용신안 등록증사본 또는 등록원부 사본 첨부
- 마. 최초 출원인 확인자료

□ 투자실적(최근3년간)

(단위 : 백만원)

기술개발투자금액	건설부문총매출액	비 고

- 가. 기술개발 투자는 최근 3년간을 작성하고 연도별 합계 및 3년 평균 기재
- 나. 회사설립 년수가 3년 미만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로 평균함
- 다. 본 과업에 공동으로 참여한 경우는 각 구성원별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평가
- 라. 제출서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같은법시행령 제9조에 의한 투자금액으로 신고된 금액으로서 증빙서를 제출할 수 있어야 하며, 건설부문 총매출액, 건설기술개발 및 투자액은 최근3년간을 합산하여 기재
- 마. 실적이 없는 회사도 양식에 “실적없음”을 기재

□ 활용실적(건설신기술,특허,실용신안, 연구보고서를 각각 구분 작성)

연번	개발 연도	보호 기간	건명	등록 권자	출원자	공사 발주처	적용 공사명	공사 기간	기성 시점	활용 금액	비고

※ 작성요령

- 가. 보호기간 :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을, 특허,실용신안은 출원일로부터 경과기간을 기재
- 나. 적용공사명 : 해당 건설신기술, 특허, 실용신안을 설계에 적용되어 공사에 반영된 공공공사명을 기재
- 다. 기성시점 : 해당기술의 공사기성완료시점을 기재
- 라. 활용금액 : 해당기술이 공사에 반영되어 기성완료된 금액(도금액 기준)을 기재
- 마.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 바. 특허 및 실용신안의 활용실적은 발명진흥법 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재정상태 검토보고서

상 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구 분	설계등 용역업자			000000회사			
면 번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	경영비율(%)	산출근거(단위 : 백만원)					
부채비율		타인자본			자기자본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출액순이익율		순이익(법인세차감전)			총매출액		
총자본회전율		총매출액			총자본		
기술개발투자비율 (최근3년)		기술개발투자액			총매출액		
최근년도 실질자본금 (자산총계-부채총계)		자산총계			부채총계		
최근년도 순유동자산 (유동자산-유동부채)		유동자산			유동부채		
2. 검토기준							
가. 결산서 작성사유 :							
나. 결산서의 종류 :							
다. 결산서 작성년월일 :							
라. 기 타							

※ 상기내용은 위 기재회사의 결산서에 따라 공인회계사(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반기검토보고서 작성절차 또는 감사보고서 작성절차를 거쳐 작성한 것에 한함)나 세무사(세무사법 제2조제7호에 의해 본인이 작성한 것에 한함)가 작성하였음을 확인하며 이 재정상태 검토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9 년 월 일

사무소 :

주 소 :

연락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

(인)

<양식 11>

□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철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책임기술자 능력평가서

2022. .

업 체 명

210mm×297
210mm×297mm

1. 기술능력 평가서

1.1 당해 용역의 내용 및 이해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용역의 특성, 내용 및 범위, 용역 수행상 주안점 제시

1.2 당해 용역 관련 유사사업 제시(5건을 3페이지 이내로 작성)

구분	사업명	수행기간	시행청
1			
2			
3			
4			
5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내에 시행한 용역사업 중 유사사업을 제시하고, 사업별 세부내용은 사업명별로 아래에 기술할 것

1) 사업명 :

* 앞에서 제시된 용역수행상 주안점을 기준으로 사업별로 관련 경험을 제시

2) 사업명 :

:

1.3 용역 성공을 위한 요건 및 추가제안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앞에서 제시된 용역 수행상 주안점 및 관련 유사경험을 토대로 당해 용역 성공을 위한 제안사항을 기술(착안사항 포함)

*** 주요 제안사항**

- 관련 계획, 법령 등의 검토 및 설계적용사항(연계방안 등)
- 환경영향평가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설계 방법(노선 등)에 따른 제안 및 고려사항
- 현장조사 시 주요 고려사항
- 예상문제점 및 처리대책(예상 민원 포함)
- 사업효과 극대화 방안

2. 업무관리능력 평가서

2.1 당해 용역 관련 업무 수행범위(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과 관련한 주요 업무, 작업수행내용을 기술
 - 조사항목 및 내용
 - 당해 용역 관련 각 분야(철도 등)별 주요 업무
 - 주요 업무별 특이사항(작업기간, 작업내용 등)

2.2 작업계획서(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2.1과 연계하여 용역의 일정계획 제시(각 업무별 선행 및 후행 관계 등 명시)

2.3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2페이지 이내로 작성)

- * 해당 사업수행조직내의 품질보증체계 및 품질관리계획을 명시(책임 기술자가 고용된 회사의 품질보증체계와 연계하여 기술)

2.4 전문가 활용계획 등 추가 업무관리사항(1페이지 이내로 작성)

- * 당해 용역 수행관련 필요한 전문가 기술 및 활용계획 제시
- * 당해 용역 수행상 업무관리상 주안점(조직 및 업무 간 연계 고려)

<양식 12> - A4형으로 제출 공문에 첨부

참여기술자 현황

□ 용역명 : ○○-○○ 철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업체명	대표이사	담당자	연락처		참여기술자			소속
			TEL	FAX	분야	성명	주민등록번호	
					사업책임			
					환경 책임기술자			
					환경 책임기술자			
					환경 참여기술자			
					환경 참여기술자			

※ 우편물 수신 주소 및 담당자

○ 우편물 수신 주소
 000-000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주) 000 엔지니어링 대표이사 000

○ 우편물 수신 담당자
 - 성명 : 000
 - 연락처 : 전화 000-000-0000
 팩스 000-000-0000

**※ 우편물 담당자의 연락처는 회사 대표전화를 기재하지 말고 직접 통화 할 수 있는 번호로 기재
 요망함.**

<양식 13>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 : ○○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자 : 사업책임 ○○○, 환경 책임 ○○○, ○○○, 환경 참여 ○○○, ○○○

1. 항목별 평가점수

평가 항목	평가요소	배점	자기 평가	산출근거
1. 환경평가 가참여자 능력평가		[100]		
	(1)총괄	[11]		
	(가)등급	3		
	(나)경력	4		
	(다)실적	4		
	(2)분야별책임평가자	[20]		
	(가)등급	6		
	(나)경력	7		
	(다)실적	7		
	(2)분야별참여평가자	[17]		
	(가)등급	5		
	(나)경력	6		
	(다)실적	6		
	(4) 업무여유도	[17]		
	(가)총괄	4		
	(나)분야별 책임평가자	7		
	(다)분야별 참여평가자	6		
	(5) 교육훈련	[2]		
	(6) 과업의 이해도(前次)	[1]		
(7) 이적계수				
2. 환경평가 업체 능력평가	(1)환경영향평가등 수행실적	[14]		
	(가)환경영향평가등 수행건수	7		
	(나)환경영향평가등 수행금액	7		
	(2) 신용도	[9]		
	(가)부실평가자 및 부실업체 등	6		
	(나)재정상태 건실도	3		
	(3)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6]		
	(가)개발실적	2		
	(나)투자실적	2		
	(다)활용실적	2		
	(4)공동도급	[1]		
	(5)업체능력평가	[2]		
	(6)하도급준수	감점		
(7)청년고용	가점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기관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양식 14>

제2020 - ○○호

연구수행(참여)실적 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				전화		
	사업자번호				팩스		
	증명서용도		제출처				
연구수행 실적내용	사 업 명			과제유형			
	연구과제명			총연구기간			
	연 구 내 용 (요약)						
	기 업 부 담 금 내 역	구 분	참여 형태	연구수행(참여)기간	기업부담금(현금)	비고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p>상기와 같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참여)하였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환경영향평가협회장 (인)</p>							

<양식 15>

해외설계 수행실적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용역명	(국문) (영문)			2) 발주기관 (발주국)
3) 발주관성격	정부(), 공공기관(), 민간()	4) 계약주체	본사(), 지사(), 현지법인(,지분율 %)	
5) 신청자 (대표)	5-1) 회사명	5-2) 면허번호	5-3) 대표자	
	5-4) 영업소재지		5-5) 전화번호	
6) 계약 및 준공	6-1) 계약일자	6-2) 착공일자	6-3) 준공일자	
	6-4) 계약금액	6-5) 준공금액		
7) 원하도급 여부	원도급(), 하도급()			※ 해당란에 ○ 표
8) 공동도급 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9) 실적의 종류	개념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감리(), 건설관리(), 타당성조사(), 기타()			
II. 용역실적의 내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구분 작성		
구분	계약자 (대표)	계약자	계약자	
1) 회사명				
2) 대표	(인)	(인)	(인)	
3) 준공금액	(지분 : %)	(지분 : %)	(지분 : %)	
4) 전체용역규모 (본란에는 주요 물량을 기재하고 필요시 세부 물량은 별지 제6호서식을 활용)				
III. 불입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용역 준공실적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용역명		해외건설협회장(인)		
발주처				

<양식 16>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 확인서

I. 일반적인 사항			발급번호		
1) 신청인	1-1) 회사명		1-2) 대표자		
	1-3) 영업소재지		1-4) 면허번호		
II. 해외설계용역					
1) 공사명	(국문)				2) 발주기관 (발주국)
	(영문)				
3) 계약 및 준공	3-1) 계약일자		3-2) 착공일자		3-3) 준공일자
	3-4) 계약금액			3-5) 준공금액	
4) 공동도급여부	공동이행방식(), 분담이행방식(), 단독도급() ※ 해당란에 ○ 표				
III. 참여기술자 현황		* 참여기술자별로 구분 작성			
구분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격종목	자격등록번호	참여기간
1) 사업책임기술자	○○○	111111-1111111	○○○○○기술사	○○○○○○○○○	개월
2)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3)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4)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5) ○○분야책임기술자	○○○				개월
IV. 붙임					
1) 기타 실적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p>위와같이 해외설계용역 참여기술자가 있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2020 . . .</p> <p>해외건설협회장 귀하</p> <p style="text-align: right;">주소 : 회사명 : 대표 : (인)</p>					
확인자					
용도	P.Q., 입찰, 적격심사, 기타			위 내용을 증명함. 해 외 건 설 협 회 장(인)	
발주처					
공사명					

국토교통부

환경영향평가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 철도건설공사 환경영향평가용역]

2022. .

(주)○○엔지니어링